

1권 차주소식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110] 0-13911 서울·중구 장충동 1가 38-84호, 2층
TEL: 279-6891, 274-2883, 273-9244
FAX: 264-2778

Mc. C. 14

796-8366

1993. 12. 17

한여연 : 제93-150호

수 신 : 각 신문사 생활(과학)부 기자

제 목 : '성폭력특별법 제정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 기자회견 취재협조의 건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연합은 이에 대한 평가 및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취재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일시 : 1993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여성평화의집 강당(지하)

내용 :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경과보고

입장 발표(논평)

2. 이후 활동 계획 발표

3. 논평 : 이중걸(연호자, 여성계 성폭력방지 학생위원)

5. 질의응답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명숙, 이영순, 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이

("직인생략")

기자회견

제 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일 시 : 1993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여성평화의집 강당(지하)

〈순서〉

1. 인사말 :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공동대표)

2. 경과보고 (*문건참조)

3. 여성계 입장 발표 : 최영애(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4. 논평 : 이종걸(변호사, 여성계 성폭력법안 작성위원)

5. 질의응답

94p-22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여성운동계는 그동안 절차 총폐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의 일환으로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하의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제정운동 3년만에 비로소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게 된 바경은, 그간 성폭력을 개인적 범죄로 간주하며 손질상실로 보는 잘못된 동년에 입학한 천황법과 수사관찰,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제도적 대책 하나 없이 방치되어 온 성폭력피해 여성들의 권익을 회복시키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특별법 제정 자체는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달길 것인가가 관건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그간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여성계의 입장으로서는 “실망스럽니”라는 표현외에 다른 적절한 날말을 찾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형법보다는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인식화할 가치를 줄 수 있을 뿐이다.

이번 법안은 더욱과 같은 첨에서 성폭력에 대한 기초의 놓남, 기초의 법관행 정신에서 거의 빛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개념규정에 있어서 여전히 “정조에 관한 치”를 적용하고 있다. 여성의 정조유린 여부만을 보는 기준의 등남에 대해 여성계는 성폭력을 사회적폭력이자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의 죄, 또는 성적자유의사 침해의 죄로 반드시 새롭게 규정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전혀 개념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친고죄가 국히 부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친고죄의 존폐여부는 성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본 인식에 관한 것으로 친고죄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정신이자 가장 큰 걸작 사항중의 하나였으나 전면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여전히 피해자의 행동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여부가 아닌 이를 포함한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여 여성을 강제적 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을(일명 비통의간음

죄의 신설)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넷째, 범죄 유형에 있어서

① 성질을 행위에 대입 고정기 배제되어 있다.

② 비동의 간음죄가 배제되어 있다.

③ 구강, 항문에 성기 이외의 물질을 두입하는 행위인 '증주행설'가 누락되어 있다.

④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등에 있어서

⑤ 동료에 의한 성폭행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⑥ 상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최종 신신비약사가 제외되어 있다.

다섯째,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조치가 미흡하다.

① '증거능력에 대한 특례'가 배제되어 있다.

② 피해자 대화인제도가 배제되어 있다.

③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의료조치(병원의 진단서 발급의무 명시, 진단서 발부와 치료시 의료혜택 등)가 배제되어 있다.

동기준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서 성폭력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배상 한길제도가 배제되어 있다.

⑥ 검사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인정하여 부당한 수사로 연결된 불기소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⑦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소송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권리등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갖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법집행과정,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의 책무 이행, 여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성폭력특별위원회'와 같은 책임적인 기관이 배제되어 있는 첫째

이번 법안에서 그래도 기존의 법안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기존의 형법에서 배제되었던 성폭력범죄 유형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아인에 대한 준강간등(제8조), 중증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봉신미적이 동음란(제14조)의 죄가 신설된 점.

둘째, 상담소의 설치(제23조), 보호시설의 설치(제25조), 경비의 보조(제30조)등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

을 미흡하나마 명시해놓고 있는 점.

셋째,加害者 처벌규정에 있어서 형법제도 외의 보호관찰(제16조), 보호감호(제17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넷째, 피해자보호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21조), 심리의 비공개(제22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다섯째, 보건상담 및 치료, 신체적 정신적 치료등의 의료보호(제33조)조항이 새로 도입된 점 등이다.

천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뜻미치는 법안으로 성폭력민족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범인의 후속작업으로 진행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보완되어야 보나 모범 자체의 내용나 많은 한계성 때문에 어느정도 성과가 있을뻔 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다만 제한적 차원에서나 본 연합 성폭력특위 단체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여성계가 요구해온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담겨지도록 혁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차후에 성폭력법에 대한 개정운동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성폭력관련 여성정책을 진밀히 연결시켜 요구하는 제활동을 지속시키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성과를 정착,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12개 민간·사회단체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민간여성사회단체의 연대 속에 지난 3년여동안 꾸준히 벌여온 성폭력특별법제정 운동 결과 성폭력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커다란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함께 힘을 합해 온 여러 여성사회단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3. 12. 20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거창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기독평화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서울YMCA, 전북여성의전화, 창의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친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법률학회 전문지의 조언

변호사 이 총집

처음에 여성단체에서 성폭력특별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동법 제정운동을 펴면서 이 투고자 했던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구성요건의 확장 및 처벌의 다양, 개별화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특례
3. 성폭력피해자의 사회복지적인 보호

그리서 처음에 이상은적인 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던 것 수차례 수정하여 많은 공 청회 및 논의 끝에 현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 담아 제시안으로 발표하였고 이 것이 입법청원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여성단체가 제기한 최소한의 내용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첫째, 성폭력 범죄 처벌 또는 형벌의 다양, 개별화를 위한 시도가 전혀 없다.

둘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특례는 전혀 무시되었다. 제정법의 제 21조(피해자 신신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제22조(심리의 비공개)는 종전의 법규정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구성요건의 확장면에 있어서도 미흡함의 면치 못하고 있다.

가. 성폭력 범죄 처벌의 다양·개별화

가해자의 첫 물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초기 간 법정 등

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특례

친고죄로 존치시키며 일반 범죄로서의 생격을 문제시키는 현행 제도를 고쳐서 비친
고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복하나 필요로 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절차의 특례를 강화하였던 것인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음.

다. 성종이 법전의 처벌에 대한 규정을

정조에 관헌죄라는 개념을 불식시키는 대표적인 구성요건으로서 비통의간음죄등의 신설이 받아들여 지지 않음

증강제주행이 빛이 뿜여지지 않을

업무상 위법동에 의한 추행단이 신설되어 직장내의 성추행문제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고용상 문제 사법상의 문제로 둘러듭니다.

학, 이에 반하여 사회복지적인 피해자 보호부문에 관하여는 상당히 여성단체안이 발
아 들여진 듯하나, 이외 유사한 제도들이 이미 다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법
적으로는 보호 보장되고 있으나 주상적권리로서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案(代案)

議 案	
番 號	

提案年月日 : 1993. 12.

提 案 者 : 法 制 司 法 委 員 會 委 員 長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1992年 7月 13日 姜善泳·朱良子議員 外 20人이 發議한 性暴力豫防 및 規制 등에 관한法律案과 1992年 7月 22日 朴相千議員 外 95人이 發議한 성폭력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92年 10月 2日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되어 第159回 國會(定期會) 第8次 委員會(1992. 11. 3)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다음 質疑·答弁을 거쳐 刑法案審查小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查하도록 하였고, 1992年 10月 31日 邊精一議員 外 29人이 發議한 性暴力行爲處罰 등에 관한法律案이 1992年 11月 2日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되어 第159回 國會(定期會) 第9次 委員會(1992.11.9)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刑法案審查小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查하도록 하였음.

나. 그리고 1992年 8月 1일 李愚貞議員의 소개로 韓國女性團體聯合會會長 조화순 外 13人이 제출한 性暴力對策에 관한特別法立法請願이 1992年 10月 6日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되어 第159回 國會(定期會) 第8次 委員會(1992.11.3)에서 請願趣旨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刑法案審查小委員會에 回附하였음.

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1993年 5月 11日 公聽會를 개최하여 學界·法曹界 및 女性團體의 의견을 收斂하였고, 刑法案審查小委員會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4次에 걸쳐 3個法律案과 1個 請願을 진지하게 審查

한 결과 3個 法律案을 통합하여 單一案을 마련하기로 하고 第165回 (定期會) 第18次 委員會(1993.12.16)에 이를 報告한 결과 同委員會에서 는 이를 3個 法律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代案 을 提案하기로 하였음.

2. 代案의 提案理由

최근 각종 性暴力犯罪가 점차 凶暴化·集團化·知能化·低年齡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淫亂行爲등 새로운 유형의 性暴力犯罪가 빈발하여 기존의 法體系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規定을 新設 또는 強化하고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搜查·裁判등 司法處理節次에 있어서 特例를 인정하도록 하며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女性과 未成年者를 性暴力犯罪의 威脅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社會秩序를 確立하려는 것임.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尊屬등 年長의 親族에 의한 強姦·醜行과 身體障礙者에 醜行을 處罰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非親告罪로 함(案 第7條·第8條 및 第15條).

나. 전화·우편·컴퓨터등 通信媒體를 이용한 淫亂行爲와 버스·지하철·극장등 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을 處罰하도록 하고 이를 親告罪로 함(案 第13條·第14條 및 第15條).

다.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宣告猶豫 또는 執行猶豫를 할 때에는 一定期間 保護觀察을 命할 수 있도록 하고, 性暴力犯罪를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監護對象犯罪로 보도록 함(案 第16條 및 第17條).

라.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直系尊屬에 대한 告訴制限과 6個月의 告訴期間制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案 第18條 및 第19條).

마.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 관한特例法의 一部規定을 準用하도록 함(案 第20條).

바. 性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는 者는 被害者의 身元과 私生活秘密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被害者의 申請이 있으면 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를 非公開로 할 수 있도록 함(案 第21條 및 第22條).

사.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性暴力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案 第23條 내지 第32條).

性暴力犯罪의處罰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法律案(代案)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法은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 刑法 第22章 風俗을 害하는 罪 중 第242條(淫行媒介) · 第243條(淫畫等의 頒布等) · 第244條(淫畫等의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
- 刑法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 중 醜行 또는 妖淫을 목적으로 하거나 醜惡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第288條(營利等을 위한 略取 · 誘引 · 買賣等) · 第292條(略取 · 誘引 · 買賣된 者의 収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略取 · 誘引이나 買賣된 者를 収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 · 第293條(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略取 · 誘引이나 買賣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収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 · 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 중 第288條의 略取 · 誘引이나 買賣된 者를 収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 중 第288條의 略取 · 誘引나 買賣된 者를 収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 刑法 第32章 貞操에 관한 罪 중 第297條(強姦) · 第298條(強制醜行) · 第299條(準強姦 · 準強制醜行) · 第300條(未遂犯) · 第301條(強姦等에 의한 致死傷) · 第302條(未成年者에 대한 妖淫) · 第303條(業務上威力等에 의한 妖淫) 및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妖淫 · 醜行)의 罪

4. 刑法 第339條(強盜強姦)의 罪

5. 이 法 第5條(特殊強盜強姦등) 내지 第14條(通信媒體利用淫亂)의 罪

② 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

第3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青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條(被害者에 대한 不利益處分의 禁止)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 被害者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韓屬등 年長의 誓護이 刑法 298條(強制騷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이 處한다.

④ 第1項의 誓護은 4년이내의 血族을 處한다.

⑤ 第1項 및 第2項의 誓護 또는 韓族은 사실상의 血族에 處한 韓屬 또는 韓族을 포함한다.

第2章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節次에 관한 特例

第5條(障礙人에 대한 特殊強盜等)에 해당하는 犯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이유하여 死刑은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但 297條(強姦) 또는 299條(準強姦)

第5條(特殊強盜等)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強姦) 내지 第299條(準強姦·準強制騷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 刑法 第334條(特殊強盜)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強姦) 내지 第299條(準強姦騷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6條(特殊強姦등) ① 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 合同하여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 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 第299條(準強姦·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例에 의한다.

④ 第1項의 방법으로 身體障礙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도 第1項 또는 第2項의 例에 의한다.

第7條(親族關係에 의한 強姦등) ① 尊屬등 年長의 親族이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尊屬등 年長의 親族이 刑法 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 第1項의 親族을 4寸이내의 血族을 말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尊屬 또는 親族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尊屬 또는 親族을 포함한다.

第8條(障礙人에 대한 準強姦등) 身體障碍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는 刑法 第297條(強姦) 또는 第298條(強制醜行)의 例에 의한다.

第9條(強姦등 傷害·致傷) ① 第6條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7條 또는 第8條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10條(強姦等 殺人·致死) ① 第5條 내지 第8條의 罪 또는 刑法 第297條(強姦) 내지 第299條(準強姦·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6條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 第7條 또는 第8條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④ 法律에 의하여 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罰金을 부과하는 경우에
 第11條 (業務上 威力등에 의한 醜行) ①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
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醜行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法律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
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 保護觀察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保護
 第12條 (未遂犯) 第5條 내지 第11條의 未遂犯은 처벌한다.

第13條 (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公
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醜行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條 (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畫, 映像 또는 물
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條(告訴) 第11條 · 第12條(第1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 · 第13條 및
第14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16條(保護觀察) ① 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宣告를
유예할 경우에는 1年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命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을 命하여야
한다.

② 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는 그 執行猶豫期間내에서 일정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命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을
命하여야 한다.

③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로서 刑의 집행중에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
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허가한 行政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保護觀察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保護
觀察法을 準用한다.

第17條(保護監護) 第5條 내지 第12條의 罪는 社會保護法 第5條(保護監
護)의 別表에 規定된 罪로 본다.

第18條(告訴制限에 대한 예의)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24條
(告訴의 制限)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直系尊屬을 告訴할
수 있다.

第22條(審理의 非公開) ① 性暴力犯罪에 대해서 是非는 그 被害者的 사생활
을 보호하기 위하여 必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被人으로 소송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가족은 사생활의 隱匿
의 사유로 被人으로서 本公案을 隱匿할 수 있다.

第19條 (告訴期間) ① 性暴力犯罪 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30條 (告訴期間)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起算한다.
 ② 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第20條 (特定強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例法의 準用) ① 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節次에는 特定強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例法 第7條(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 · 第8條(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 · 第9條(訴訟進行의 協議) · 第12條(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5條 · 第6條 · 第9條 · 第10條 및 第12條(第5條 · 第6條 · 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는 特定強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例法 第2條(適用範圍)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強力犯罪로 본다.

第21條 (被害者の 身元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性暴力犯罪의 搜查 또는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の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기타 被害者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사진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の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2條 (審理의 非公開) ① 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그 被害者の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證人으로 소환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裁判長은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공개, 法廷의 의 장소에서의 訊問등 證人の 訊問方式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④ 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保健施設과 設置基準과 취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 으로 정한다.

第3章 性暴力被害相談所 등

第26條(保健施設의 업무) 保健施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第24條(性暴力被害者에 대한 보호)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著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 으로 정한다.

第24條(相談所의 업무) 相談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性暴力被害을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 일
3.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性暴力犯罪 및 性暴力被害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第25條(保護施設의 설치)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保護施設의 設置基準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 令으로 정한다.

第26條(保護施設의 업무) 保護施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第24條 各號의 일

2. 性暴力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性暴力被害者の 신체적·정신적 安定回復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性暴力被害者の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第27條(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8條(監督)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9條(許可의 取消등)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停止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23條第3項 또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第30條(경비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第31條(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2條(類似名稱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性暴力被害相談所·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3條(醫療保護)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를 性暴力被害者의 치료를 위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號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性暴力被害者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性暴力被害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第34條 (권한의 위임) 保健社會部長官과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4章 罰則

第35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營利를 목적으로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者
 2.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업무의 休止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施設保護을 계속 운영한 者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

第36條 (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
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類似名稱使用禁止를 위반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부과·징수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1項의 行爲가 第37條(兩罰規定)에 관하여 대여는 이 法施行前 第37條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3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特定犯罰加減의 例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6 및 第4條의 7을削除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 은 1994年 4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前에 행하여진 第2條의 罪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 1個의 行爲가 이 法 施行前後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法 施行前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第20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前에 公訴가 제기된 事件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 6 및 第5條의 7을 削除한다.

일시 : 1993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여성평화의집 강당(자하)

내용 :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등 경과보고

입장 발표(논평)

이후 활동 계획 발표